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0.(화) 11:00 2026. 11. 11.(수) 조간	배포	2026. 11. 10.(화) 06:00

’26년도 염소고기에 대한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개시

- 691호 농가 대상, 총 4,972백만원, 11월 중순부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오는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으로 691호 농가 대상, 총 4,972백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하였고,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 ’26년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개 품목

6월에는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품목으로 선정하고,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지급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농업인의 지급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후 엄격한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염소고기의 지급단가는 마리당 60,350원이며 최대 지원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인은 3천5백만원으로 제한된다.

개별 농가의 직불금 지급 확정 내역 및 구체적인 입금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개요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1711)
		담당자	사무관	김윤희 (044-201-17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개요**

□ **(취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FTA 농어업법 제6조1항)

□ **(지원대상품목)**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시행령 제4조2항1호)

□ **(지급기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불금 지급(법 제7조1항)

○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산출식)** 생산면적·생체중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출하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상한액) 농업인 3천500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

○ **(지급단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

* {(직전 5개년 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 평균가격 × 0.9) - 해당연도 평균가격} × 0.95

○ **(조정계수)** = (지급 가능 보조액/지급 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 협정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지원대상품목의 전년도 평균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정도(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는 값)

□ **(시행기간)**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15년(법 제6조)

□ **('26 예산)** 180억원